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소방 및 통학차량 사례집





들어가는 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6년간(14년~19년) 총 64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소방 및 통학차량 사례집」은 그동안 실시한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만족도 설문 및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관리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현장 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제반 규정 및 객관적 정보의 제공 요구가 있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집 구성은 컨설팅 사례 중 소방안전과 통학차량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흡한 사례와 우수한 사례를 비교하고,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부록에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록부, 안전관리 자가 점검표 등 참고서식 및 예시를 담았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소방 및 통학차량 관련 미흡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각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어린이집 구성원 및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소방 컨설팅 사례

1. 소방설비 컨설팅 개요	10
가. 어린이집(노유자시설) 소방설비 설치 기준	10
나. 2019년도 소방분야 컨설팅 결과	11
2. 소화설비	12
가. 소화기구	12
나. 자동확산소화기	16
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17
라. 스프링클러	18
마. 소화전	19
바. 송수구	19
3. 경보설비	20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20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21
4. 피난구조설비	22
가. 피난기구	22
나. 구조대	22
다. 유도등	23
라. 휴대용비상조명등	25
마. 비상구	25
5. 소방 기타	28
가. 방염	28
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29
다. 피난안내도	30
라. 비상대응훈련계획 등 서류	30
6. 전기	32
7. 가스	33



통학차량 컨설팅 사례

1. 차량 관련 표시	36
가. 어린이 보호 표시	36
나. 정지표시장치	37
다. 금연표시 및 안전수칙	37
2. 차량 장치 관련	38
가. 표시등	38
나. 승강구 발판	38
다. 간접시계장치(광각 실외후사경)	39
라.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40
마. 차량연한	40
바. 틴팅	41
3. 기타 안전장치	42
가. 영아용 보호장구	42
가. 차량용 구급함	43
가. 차량용 소화기	43
4. 차량관련 서류	44
가. 차량신고필증 및 안전교육확인증	44
가. 운전경력조회 등 서류	44



참고서식(예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서식	46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예시	47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48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평가서 예시	49
비상 시 대처방안 서식	50
비상연락망 편성 서식	51
어린이집 소방안전관리 자가 점검표	52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자가점검표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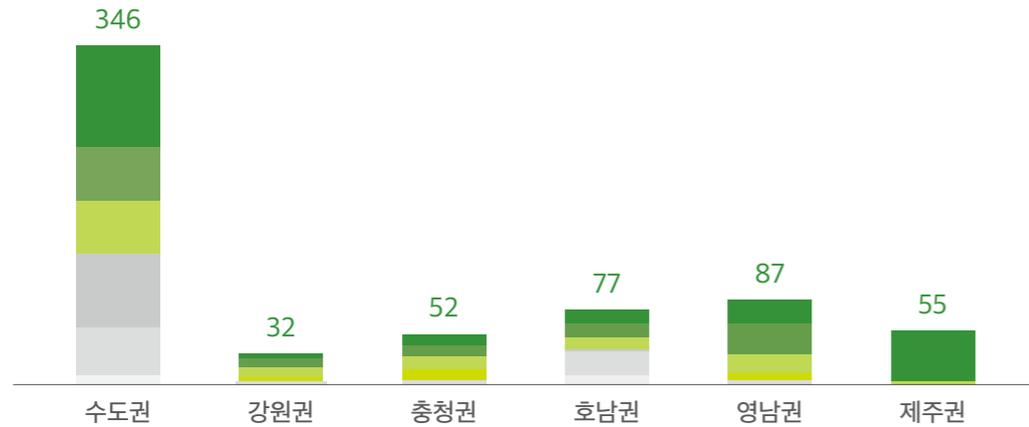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그간의 실적



지역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수도권	10	48	76	53	55	104	346
강원권	0	4	4	10	9	5	32
충청권	0	5	11	13	11	12	52
호남권	10	24	2	12	15	14	77
영남권	0	5	7	19	32	24	87
제주권	0	0	0	4	0	51	55
합계	20	86	100	111	122	210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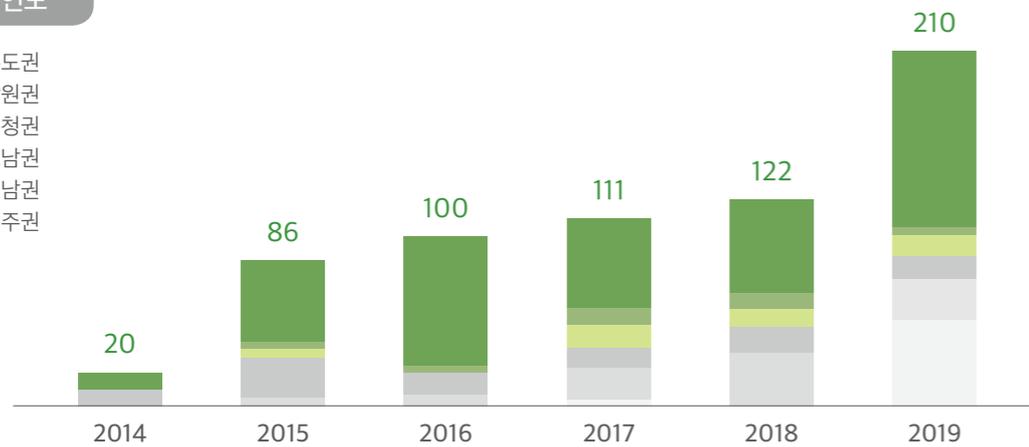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최근 3년간 화재사고 접수건수 및 주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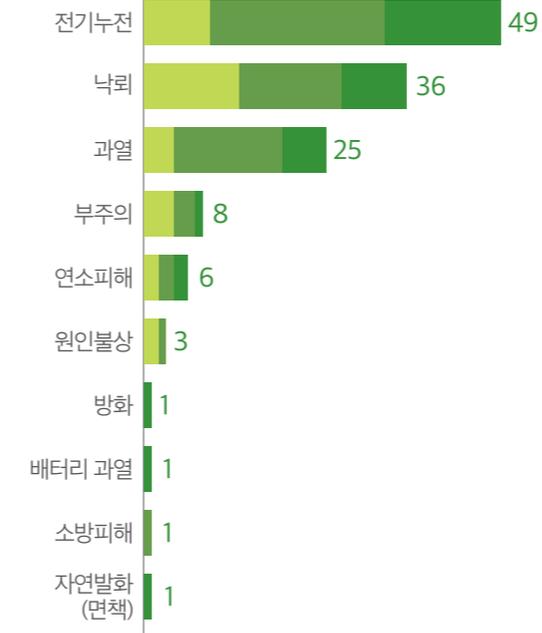


발생원인 \ 발생연도	2017	2018	2019	합계
전기누전	9	24	16	49
낙뢰	13	14	9	36
과열	4	15	6	25
부주의	4	3	1	8
연소피해	2	2	2	6
원인불상	2	1		3
방화			1	1
배터리 과열			1	1
소방피해		1		1
자연발화(면책)			1	1
합계	34	60	37	131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사고통계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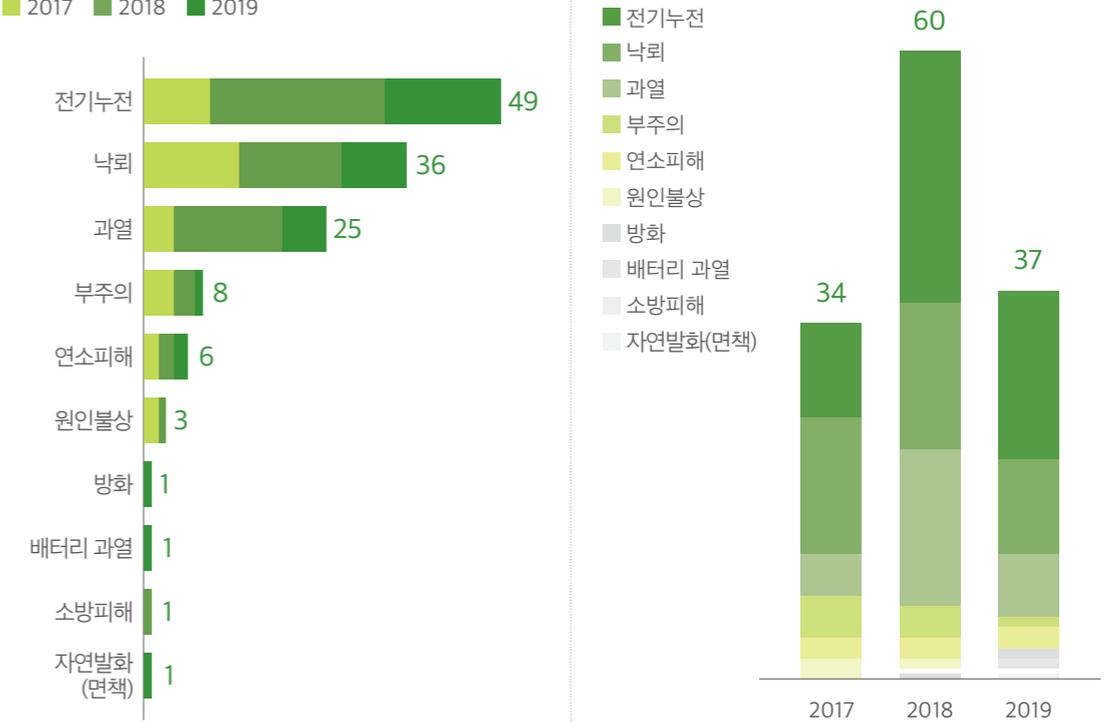
발생원인

2017 2018 2019



발생연도

전기누전
낙뢰
과열
부주의
연소피해
원인불상
방화
배터리 과열
소방피해
자연발화(면책)



01

소방 컨설팅 사례



1. 소방설비 컨설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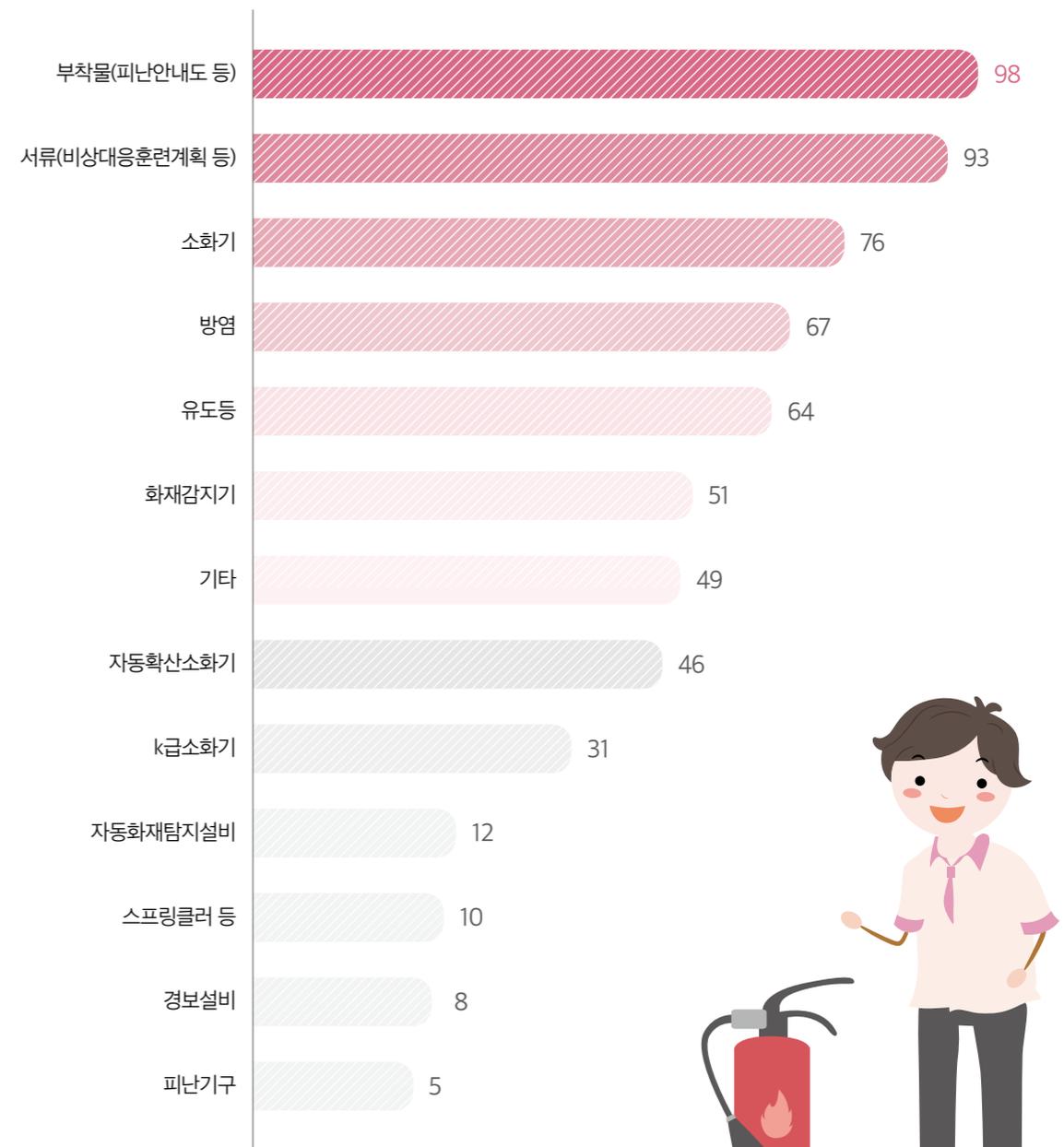
가. 어린이집(노유자시설) 소방설비 설치 기준

설비종류		설치기준 및 주요내용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수량산정 : 노유자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마다 1능력 단위 이상 / 3.3kg소화기는 3능력 단위)
	자동확산소화기	노유자시설 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 상단에 설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공동주택(아파트) 주방에 설치(2004년 이후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바닥면적합 600㎡ 이상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 합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바닥면적 합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전층 지하층/무창층 4층이상 중 바닥면적 600㎡ 전층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포함)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단독형감지기	구획된 모든 실(소방시설법 및 영유아보육법)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노유자 시설인 경우 구조대와 미끄럼대는 3층 이하에 설치 가능 노유자 시설인 경우 완강기 설치 불가
	유도등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 정전되었을 때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20분 이상 유지
	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 및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등 (어린이집은 의무설치 대상은 아님)



나. 2019년도 소방분야 컨설팅 결과

컨설팅 결과서 기준 소방분야 주요 미흡사례 현황(2019년 기준)



2. 소화설비 물 및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소화기구

① 배치기준 및 내용연한

미흡사례

소화기 분산 배치 미흡



장애물 등으로 인해 소화기 식별 및 신속 사용 제한



사례 설명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바닥 면적이 33㎡(10평) 이상으로 구획된 실에 소화기 추가 배치
소화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관련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미흡사례

내용연한 초과



우수사례

내용연한 준수



사례 설명

관련법 개정(2017년 1월 28일 시행)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한은 10년
내용연한을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소화약제 충전 또는 교체(충전비용 등 고려 교체 권장)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② 소화기 표지판

미흡사례

소화기 표지판 미설치



소화기 표지판이 부착된 곳에 소화기 미비치



우수사례

소화기 비치 및 소화기 표지판 부착 우수



사례 설명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
소화기 위치표지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소화기 상단에 부착, 원거리에서도 누구나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설치

관련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③ 안전핀

미흡사례

안전핀 이탈



우수사례

안전핀 이탈방지 봉인 줄 사용



압력계이지 정상(녹색)



사례 설명

소화기 안전핀 이탈(분실) 및 오작동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줄 사용 권장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화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

관련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제2의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④ 소화기 점검표

우수사례 😊

ABC급 분말소화기



(AB)K급 액체소화기



소화기 점검표



소화기 자체 점검 기록부



사례 설명 소화기는 A(일반화재)급, B(유류화재)급, C(전기화재)급, K(주방화재)급 소화기로 구분되며, 각각의 화재 적응성을 보유 어린이집의 경우 소화기 점검표 작성 의무는 없으나, 소화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점검표 작성 권장 (공공기관 외의 건물은 점검기록부 작성의 의무가 없으나,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별도의 점검일지(대장)를 만들어서 관리 가능(P.46 예시 참조)

관련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

⑤ K급 소화기

우수사례 😊





사례 설명 주방에는 식용유 등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K급 소화기와 일반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ABC급 소화기를 병행 비치, K급 소화기는 2017년 6월부터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주방에 의무 비치 (2017년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비치 권장)

관련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⑥ 소화기 보관

우수사례 😊






사례 설명 오작동 방지 및 영유아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소화기 케이스(투명) 사용 권장 소화기 보관함을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이 없고 내부 확인이 가능한 제품 권장

⑦ 간이소화용구

미흡사례 😞

내용물 변색



내용물 누수 및 변색



우수사례 😊

4개 1세트 설치



사례 설명 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기)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 한해 설치 가능 4개가 같이 설치되었을 때 소화기(1능력단위)로 인정 ※ 3.3킬로그램 분말소화기 1개(3능력단위) = 투척용소화기 12개(3능력단위) 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기)의 정해진 내용연한은 없으나 변색, 부유물, 누수 확인 시 폐기하고, 분말소화기(ABC급)로 교체 권장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나. 자동화산소화기

① 설치기준

미흡사례

화기취급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화기취급장소와 이격으로 화재진압 제한



우수사례

화기취급장소(가스레인지) 상단 설치 우수



화기취급장소(보일러) 상단 설치 우수



미흡사례

장애물(후드)로 인해 화기취급장소에 소화약제 분사 제한



화기취급장소에 자동화산소화기 미설치



열 감지에 의해 자동적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하므로 화기취급장소(가스레인지, 보일러 등) 상단에 수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화약제 분사를 막는 장애물이 없어야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기구가 있는 장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② 분사노즐 및 압력

미흡사례

분사노즐 보호용 캡 미제거



우수사례

분사노즐 보호용 캡 제거 완료



미흡사례

압력 부족



우수사례

압력계이지 정상(녹색)



주기적으로 압력 정상(녹색) 위치 확인(자동화산소화기의 분말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써 일반 ABC분말소화기와 동일하게 제조일로부터 10년 초과 시 교체) 설치 시 분사노즐 보호용 캡 제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설정 대상 소방용품)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제2의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미흡사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미설치



후드내 자동화산소화기 설치로 인해 정상사용 불가



우수사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우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분사노즐 상태 양호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방에 설치(2004년 이후 설치 의무화)되며, 환기구(후드) 내에 약제용기가 설치되어 후드 하단부 열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소화약제 방사 주기적으로 압력계이지 정상(녹색) 위치 확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제2의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라. 스프링클러

미흡사례



알람벨브실(유수검지장치) 적치물로 압력점검 및 오작동 시 살수 정지 등 활용 제한



우수사례



알람벨브실(유수검지장치) 표지판 부착 및 개방이 용이하여 압력점검 등 즉각적인 조치 가능



관련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2의4] 스프링클러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물(미)분무소화설비

마. 소화전

미흡사례



소화전 앞 적재물 방치



호스 즉각 사용 제한(말아서 보관 및 밸브와 호스 미체결)



우수사례



호스 전개 시 꼬임 방지 (호스걸이 사용) 및 밸브와 호스 체결 양호



호스 전개 시 꼬임 방지 (지그재기 보관) 및 밸브와 호스 체결 양호



관련 근거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2의3] 옥내·외소화전설비

미흡사례



장애물로 인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이물질(페인트 도색)로 인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함몰로 인한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우수사례



(간이)스프링클러 전원 정상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관리



사례 설명

(간이)스프링클러 헤드는 반경 60센티미터 이상(벽의 경우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 살수장애 방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제어반)은 전용배선으로 상시 전원공급 및 자동 작동상태 유지

관련 근거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12조(전원), 제13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7조(제어반), 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2의4] 스프링클러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물(미)분무소화설비

바. 송수구

미흡사례



송수구 앞 수풀(장애물) 등으로 인해 식별 및 사용 제한



송수구 마개 미설치 및 압력범위 표시 미흡



우수사례



장애물 제거, 압력범위 표시하여 화재발생 시 활용 및 소방차 등 접근용이



사례 설명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송수구 가까운 곳에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판 설치
송수구에 마개를 씌워 이물질 유입 방지

관련 근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11조(송수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2의18]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

3.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미흡사례



미흡사례



우수사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린이집 건물(1~3층) 구획된 각 실과 최상층 계단 천장에 설치 (단,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면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연기감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음향경고 발생 (일부 주방, 보일러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열감지 방식의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있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배터리로 작동되며, 5~10년 사용가능 (배터리 방전 알림 경고 발생하나, 주기적으로 작동시험버튼을 눌러 작동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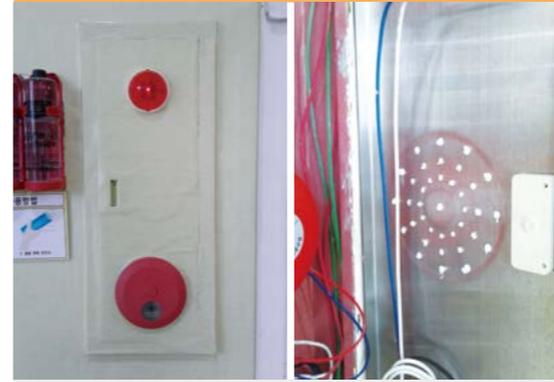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제2의11]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싸이렌)·단독경보형감지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미흡사례



미관을 위해 발신기함 경종 음향구멍 매립



우수사례



발신기함 설치 및 작동상태 양호

수신기 전원 및 정상작동 중이며 경고등(빨간색) 점등 없음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로서 음향장치(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되어야 함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제4조(비상벨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4. 재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가. 피난기구

미흡사례



사례 설명

나선형 미끄럼대 신규인가 불가 및 기존 미끄럼대는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단, 지자체 비상재해대비설치기준 심의위원회 승인 시 사용가능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사업안내 1. 어린이집의 설치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용 및 설치개수 등)

우수사례



나. 구조대

미흡사례



사례 설명

2014년부터 수직강하식 구조대(나선형, 협착형) 설치 불가
2, 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구조대 각도 등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만 해당)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사업안내 1. 어린이집의 설치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용 및 설치개수 등)

우수사례



다. 유도등

예시		복도통로유도등(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거실통로유도등(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계단통로유도등(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미흡사례



사례 설명

유도등 주변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피난방향 명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리
일반회로 차단 시에도 소방회로는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전원 전원 설치)

관련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제2의13]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미흡사례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어린이집에는 유도표지 설치 불가



우수사례

피난구유도등 설치 우수




사례 설명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

관련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

라. 휴대용비상조명등

미흡사례

배터리 방전



우수사례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




사례 설명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하는 어린이집 의무사항이 아님 설치된 휴대용조명등은 주기적으로 배터리 등 작동상태 확인하여 관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관련 근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설치기준)

미흡사례

예비전원(배터리) 전압부족으로 경고등 점등



우수사례

점검버튼을 이용한 유도등 예비전원 확인



미흡사례

비상구 부속실 출입구 유도등 미설치



우수사례

피난구 부속실 출입구 유도등 설치 우수



사례 설명 유도등의 적색등이 점등된 경우 유도등 내부 예비전원 미결선 또는 예비전원 불량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관련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제2의13]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마. 비상구

미흡사례

비상구(비상계단)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 적치



비상구의 규격이 규정에 맞지 않음




사례 설명 양방향대피를 위하여 주 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를 설치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나 장애물 없도록 관리 비상구 규격: 1층 :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 2층 이상 :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5미터 이상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사업안내 1. 어린이집의 설치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우수사례



1층 비상구 하단이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 등 설치
1층 비상구 하단이 내부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인 경우 내부에 발판 등 설치



보육사업안내 1. 어린이집의 설치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우수사례



2, 3층인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 개구부 일 경우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cm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cm 이상, 유효높이는 16cm 이하 원칙
출구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으로 설치



보육사업안내 1. 어린이집의 설치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미흡사례



비상구에 자물쇠(열쇠)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등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가 어렵고, 열쇠 분실 시 비상대피 불가



비상구는 평상 시 잠금 해제 또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걸림쇠 등을 사용하고 비상 시 신속한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평상 시 비상구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화재감지기 동작 시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거나 수동으로 비상구를 개방할 수 있는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 고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우수사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걸림쇠 (잠금장치 없는) 등 설치하여 외부 출입 방지 및 영유아출입관리 활용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



5. 소방 기타

가. 방염

미흡사례



방염제품이 아닌 커튼, 블라인드 사용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 한 제품(공장 생산 시에 방염처리 후 판매)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중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방염성능기준 제10조(표시)

우수사례



커튼, 블라인드 방염제품 사용 및 방염라벨 확인 가능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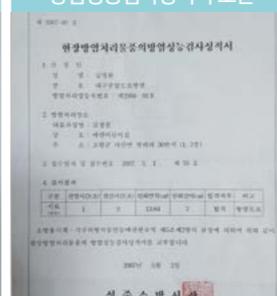
방염성능검사 결과서 보관



방염라벨 확인용 사진보관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보관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부착(보관)



방염대상물품은 방염된 물품을 구매 후 설치하는 방법과 물품을 구매 후 설치 현장에서 방염도료를 사용하여 방염 처리하는 방법으로 구분
 방염라벨(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진자료 등 별도 보관 권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별표3]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미흡사례



방염라벨 확인 불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다만,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일부 내부마감재료 제외 (현장 설치 시 방염처리 /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
 -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방염성능기준 제10조(표시)

우수사례



방염라벨 부착 확인



미흡사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실내 부착 및 규정 사이즈 미준수



A30이상 크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외부에 부착
 소방안전관리자 공개의무 규정에 따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우수사례



외부부착, 크기, 내용 기입 등 양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예시



다. 피난안내도

미흡사례



구획된 실과 피난동선 등 단순 작성, 규정된 크기 미준수



A3 이상 크기로 각 층마다 게시
단, 면적 400㎡ 미만인 경우 B4 이상 크기로 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6. 피난안내도 크기 및 재질

우수사례



소방청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참조



비상대응계획에 근거 해당연도 훈련 계획을 연초에 1회 수립
비상대응훈련은 매월 실시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모든 영유아가 참여
비상 시 양방향 대피 등 대처방안(피난안내도, 대피요령, 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등)이 마련되고
보육교직원은 대피시설과 설비를 바르게 작동하는 방법, 자신의 역할 및 대처방안 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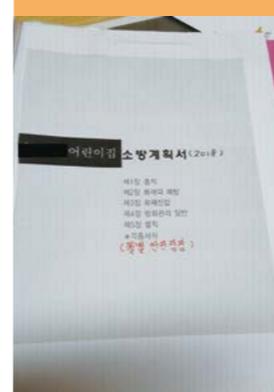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3]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보육사업안내 II.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XII. 부록 7.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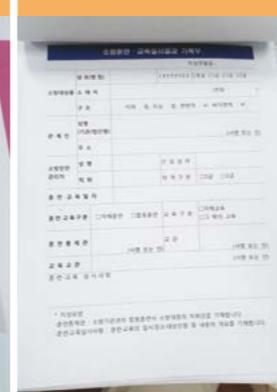
미흡사례



소방계획서 구양식



주요내용 미기입



소방계획서는 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요인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권장서식 활용/작성(한국소방안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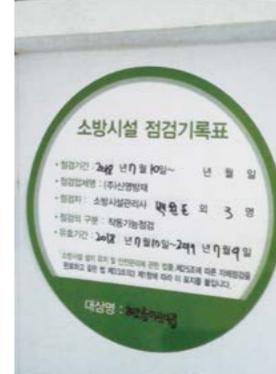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점검실명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점검기록표

우수사례



작동가능점검 후 소방시설점검 기록표 작성(부착(2년간 보관))



소방계획서 작성 후 서명 실시, 2년간 보관



6. 전기

미흡사례



화재취급장소에 전기배선 노출 및 마감미흡으로 화재발생 우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및 배선정리 미흡



우수사례



콘센트커버 활용 및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벽체 상단에 콘센트 고정



화재 발생 요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전기화재의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전기용품 및 전기배선 등 관리 철저 안전인증(KC) 제품 사용 및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묶은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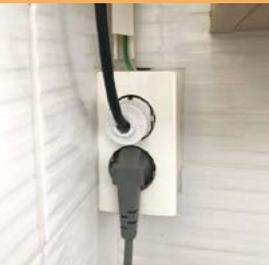


보육사업안내 II.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미흡사례



욕실 등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일반콘센트 사용으로 누전 우려



우수사례



욕실 등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적형 콘센트 사용 및 미사용 콘센트 안전커버 활용 누전 방지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욕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234.5 콘센트의 시설

7. 가스

미흡사례



가스누설경보기 전원 미연결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미흡(싱크대 서랍장 안)



우수사례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차단 장치 설치 및 전원 연결 우수



가스 미사용 시 전문업체를 통해 마감처리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 우려가 있는 실에 설치(주방, 보일러실 등)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LPG)는 연소기로부터 4m이내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LNG)는 연소기로부터 6m이내 설치하고 천장면으로부터 30cm이내 설치 상시전원 연결 상태를 확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제2의10] 가스누설경보기

미흡사례



부식방지, 전도방지, 접근방지 등 미흡



가스통 상부 보호용 캡 미설치 및 주변 가연성물질 방지



우수사례



가스통 보관함, 가림막, 체인 등을 통한 부식방지, 전도방지, 직사광선회피, 접근방지



LPG 용기는 가연성물질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LPG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 (용기보관실, 가림막 설치 등)
LPG 저장용기는 전도방지 조치(체인, 벨트 등으로 고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02

통학차량 컨설팅 사례



1. 차량 관련 표시

가. 어린이 보호 표시

미흡사례



어린이보호표시 부착위치, 재질 등 미흡 또는 미부착



우수사례



어린이보호표시 부착위치(앞면 창유리 우측상단) 및 재질 우수(아크릴), 탈부착 가능



미흡사례



어린이보호표시 부착위치, 재질 등 미흡 또는 미부착



우수사례



어린이보호표시 부착위치(뒷면 창유리 중앙하단) 및 재질 우수(아크릴), 탈부착 가능



어린이보호표시는 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보호표시 부착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나. 정지표시장치

미흡사례



정지표시장치 미설치



정지표시장치 미작동



우수사례



정지표시장치 작동 양호



통학버스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표시장치를 설치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다. 금연표시 및 안전수칙

우수사례



통학차량에는 금연 표시 및 안전수칙 부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2. 차량 장치 관련

가. 표시등

우수사례



정지 또는 출발하려고 할 때 황색(호박색) 표시등 점멸
승강구 발판이 열릴 때 자동으로 황색(호박색)에서 적색 표시등으로 변경 점멸 승강구 발판이 닫혔을 때 자동으로 적색 표시등에서 황색(호박색) 표시등으로 변경 점멸 적색 및 황색(호박색) 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아야 함
정지한 때 적색 표시등 점멸, 적색과 황색(호박색) 표시등이 동시에 점멸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나. 승강구 발판

미흡사례



승강구 발판 미작동



제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 발판 뒷면 가로너비는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너비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단, 15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음)
승하차 시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의 경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승강구)

우수사례



승강구 발판 정상 설치 및 작동



다. 간접시계장치(광각 실외후사경)

미흡사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 미설치



우수사례



광각 실외후사경 정상 설치



우수사례



광각 실외후사경 및 차체 정상 설치



자동차에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실외후사경) 설치하며, 추가로 규정에 맞는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한 경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제50조(간접시계장치)

라.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우수사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하여 통학차량 운행 후 차량내부 점검 유도



사례 설명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전원 등 임의조작을 통해 미운영 금지
추가적으로 비상벨 등을 설치 통학차량 내 혼자 남아있는 영유아가 스스로 놀러 경고 할 수 있도록 설치 권장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37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마. 차량연한

미흡사례 



사례 설명

통학차량의 차령은 9년이며,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되나, 차령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령 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차량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차량의 제작연도의 말일

관련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우수사례 

바. 틴팅

미흡사례 

틴팅으로 인한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 내부 식별 제한



사례 설명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
자동차 내 남겨진 영유아들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만큼 규정 준수를 통해 자동차 내부 확인 가능토록 관리 필요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권장사례 

틴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비용 부담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창유리 하단 일부 틴팅을 제거하여 차량내부 확인 가능토록 보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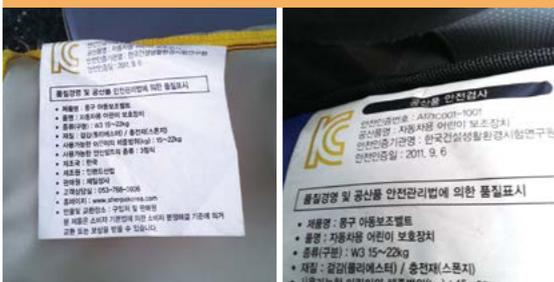
3. 기타 안전장치

가. 영아용 보호장구

미흡사례



영아의 체중범위에 맞지 않는 제품 사용 (W3 15 ~ 25kg)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보호장구 사용 필요 영아용 보호장구 관련 변경된 안전기준 확인/사용
W1(10kg 미만), W2(9 ~ 18kg) ↓
O그룹(10kg 미만), O+그룹(13kg 미만), I 그룹(9~1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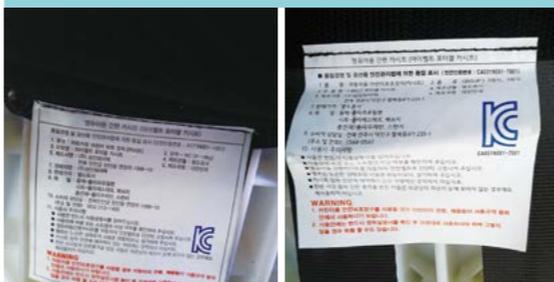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우수사례



영아의 체중범위에 맞는 제품 사용 (W2 9 ~ 18kg)



나. 차량용 구급함

미흡사례



차량용 구급상자 구성품 및 관리 미흡
(유효기간 초과)



통학차량에는 차량용 구급상자를 갖추고, 이때 구성품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약학정보원 약학용어사전) 자료를 참고하여 외상처치용품 및 상비약 등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을 권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우수사례



차량용 구급상자 구성품 및 관리 우수
(구성품 유효기간 표시)



다. 차량용 소화기

미흡사례



에어로졸식 등 간이소화용구
차량용으로 사용 불가



소화기 미설치



자동차에는 ABC급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간이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 불가)
분말소화기의 사용연한(10년) 및 압력게이지 주기적 확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우수사례



자동차겸용 소화기 구비 및 압력게이지 확인 등
주기적 점검



미흡사례



영아용 보호장구 고정 미흡



영아용 보호장구를 정상적으로 고정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부상 예방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우수사례



영아용 보호장구 고정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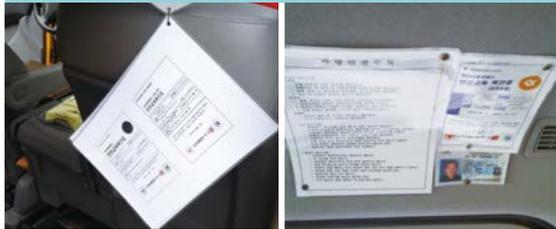
4. 차량관련 서류

가. 차량신고필증 및 안전교육확인증

우수사례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운전자용) 차량 내 비치



통학버스 신고필증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차량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 2년마다 정기교육 수료
통학버스 신고필증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도로교통법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나. 운전경력조회 등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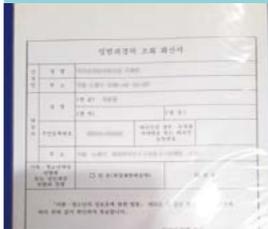
우수사례



운전자용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어린이집 내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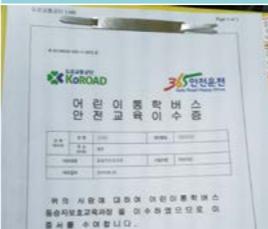
운전자 대상 건강검진,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조회



운전자 대상 운전경력 조회 실시



동승보호자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어린이집 내 비치
운전자 대상 정기적(매년 1회)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통합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매 반기별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받아 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검진)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의3
보육사업안내 II. 어린이집의 운영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보육사업안내 II.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 안전관리

03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서식(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참조)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① 점검일자	② 점검시설	③ 점검내용	④ 점검결과	⑤ 결과조치	⑥ 비 고

점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관리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예시(보육사업안내 참조)

(예시)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담당자	안전관리책임관
결		
계		

훈련명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훈련일시	2019년 00월 00일
참가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4명, 영유아 100명 [전 인원 참석토록]	훈련 진행책임자	안전관리책임관 및 안전관리자
훈련 종류	실제훈련		
훈련 목적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를 위해 비상계획에 명시된 대피에 관련된 내용을 훈련함 [대피 시간 줄이기에 중점]		
비상대응상황 시나리오	조리실의 누수로 인해 전기 배선으로 불이 김두하여 약 11시경에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경보기가 울림		
훈련 내용			
상황	대응 활동	평가중점내용	
조리실에서 화재 발생하여 화재 경보발생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시도	소화기사용	
	각반의 영유아 대피 실시	필수유지하며 대피	
	119 연락	위치, 상황설명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화재 확장	조리실 문을 닫고 계속적으로 영유아를 경계진 장소(대피장소 명시)로 대피시킨	대피시간/ 대피한 영유아 수	
	대피 후 부상자 사상자 확인	부상자 사상자응급처치	
119 출동 후 화재 진압 후 사태 종료	안전한 곳에서 대피 지속, 인근 병인 연락 영유아 부모에게 연락	연락 시간/ 응대 태도	

※ 소방훈련(실제 외부로 대피)은 매월 1회 실시 / 안전교육과는 별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 안전급식 및 위생 관리 참조]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소방청 참조)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Standard Evacuation Diagram Guide Line

01

목적 및 적용범위

표준 피난안내도는 피난안내도에 대한 작성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계자가 쉽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02

용어 정의

- 2.1 **피난안내도** 건물 내 사용자에게 피난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피난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림으로 화재 시 피난요령 및 '소화기 사용요령' 등을 포함합니다.
- 2.2 **피난동선** 화재 시 비상구 또는 계단 등으로의 피난경로를 화살표 등으로 표현한 선을 말합니다.
- 2.3 **피난방면도** 해당 층의 평면도를 간략화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동선 등을 표시한 평면도를 말합니다.
- 2.4 **현재위치** 피난안내도가 설치된 위치를 말합니다.

03

공통 작성요령

- 3.1 피난안내도는 계단, 비상구, 피난동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3.2 피난안내도는 충분한 가시성과 가독성이 있어야 합니다.

04

내용 및 표시, 설치위치

- 4.1 '화재 시 피난요령' 및 '소화기 사용요령'은 예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해당 장소에 적절한 외국어를 병기하여 사용합니다.
- 4.2 비상구 표시는 계단입구 또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예시의 범례와 같이 표시합니다.
- 4.3 피난동선은 붉은 녹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며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또는 가장 가까운 피난경로를 작성합니다.
- 4.4 소화기 및 방신기 등 소방설비는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 예시의 범례와 같이 표시합니다.
- 4.5 피난안내도는 각 층마다 설치되되 쉽게 접근하여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권련법에 따름.)

05

규격

- 5.1 크기 A3(420x297mm) 이상의 크기로 하며,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이 각각 400㎡ 미만인 경우 B4(364x257mm) 이상의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 5.2 **재질** 코팅처리한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5.3 **구성물** 피난안내도의 제목은 상단부 좌측에, 건물명(업종명)과 층수는 상단부 우측에 표기합니다. '화재 시 피난요령'과 '소화기 사용요령'은 띠도그림과 함께 중앙부 좌측에 표기하며, 그 범위가 가로 폭 대비 25%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 5.4 **글씨체** 아예와 같은 기준에 따르나, 대상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문 타이틀 : 굵은 고딕체 46포인트 이상(한체)
 - 영문 타이틀 : 굵은 고딕체 18포인트 이상(한체)
 - 건물명과 층수 : 굵은 고딕체 또는 로고 사용(한체)
 - 소재목 : 굵은 고딕체 13포인트 이상(검정색) 본문 : 고딕체 13포인트 이상(검정색)
- 5.5 **비행색** 전체 바탕색은 노랑색(Y100) 또는 흰색으로 하며, 상단의 따는 적색(C6 M100 Y100)으로 합니다.

표준 피난안내도 예시(범례)

피난안내도 제목 표기

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A)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화재 시 피난요령' 표기

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A)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영문 병기 혹은 중문 병기, 일본 병기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요령' 표기

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A)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영문 병기 혹은 중문 병기, 일본 병기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화일(A)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피난안내도 예시화일(A)을 사용하면 쉽게 피난안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화일은 A3(420mmx297mm)와 B4(364mmx257mm)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건물의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예시화일(A)은 계단실 아래 원코브에 있습니다.

건물명과 층수 표기

해당 건물의 명칭이나 업종명을 해당 층수와 함께 표기합니다. 고유한 표기를 사용할 시 비방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난방면도 표기

예시의 같이 피난동선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해당 건물에 있는 평면도를 놓으면 됩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A)의 띠도그림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 다음 페이지의 피난방면도 작성 Tip을 참조하세요!

범례 표기

범례는 피난방면도와 함께 예시의 같이 표기하며, 조합이나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영문 병기 혹은 중문 병기, 일본 병기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조합(예시화일)에 성부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평가서 예시(보육사업안내 참조)

(예시) 00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평가서

결 재	담당자	안전관리책임관

훈련명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훈련일시	2019년 00월 00일
참가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4명, 영유아 100명 [전 인원 참석도록]	훈련 진행책임자	안전관리 책임관 및 안전관리자
훈련 목적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를 위해 비상제출에 명시된 대피에 관련된 내용을 훈련함 [대피 시간 줄이기에 중점]		
비상대응상황 시나리오	조리실의 누수로 인해 전기 배선으로 불이 침투하여 약 11시경에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경보기가 울림		
훈련 내용		평 가	
대응 활동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시도	소화기사용	소화기 위치를 빠르게 파악했는가?	조리실내 소화기 확인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였는가?	안전핀 제거, 노즐 화재방향,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 눌러 분사
각반의 영유아 대피 실시	질서유지하며 대피	남아있는 인원은 없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였는가?	담당교사(주임교사)에 의해 최종 확인 완료
		영유아는 질서를 지켜 대피를 하였는가?	반별 질서유지하며 대피
119 연락	위치, 상황설명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119에 연락하여 전달하였는가?	담당교사에 의해 연락 완료
조리실 문을 닫고 계속적으로 영유아를 경계한 장소 [대피장소 명시]로 대피시킴	대피시간 대피한 영유아 수	대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1분 25초 소요 / 지난달 훈련보다 10초 단축됨, 반복연습으로 인한 시간단축 [초단위 기록 / 평가]
		대피한 영유아의 인원파악을 하였는가?	대피장소(최종집결지)에서 반별 인원 파악 완료
대피 후 부상자 사상자 확인	부상자 사상자응급처치	부상상태를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부상자 없음
		사상자 응급처치를 진행하였는가?	사상자 없음
안전한 곳에서 대피 지속, 인근 병원 연락 영유아 부모에게 연락	연락 시간 응대 태도	병원에 방문 여부를 확인 (기록)하였는가?	우유중 대비를 위해 부모들 통해 원아별 병원 진료 권장 및 추적확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였는가?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 완료

※ 화재발생장소, 피난방향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피장소(최종집결지) 선정/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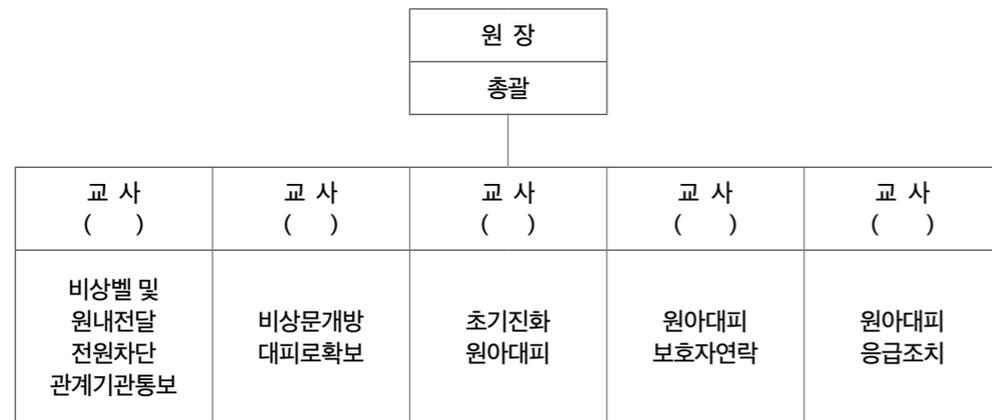
※ 비산물, 화염 등에 의한 피해 및 소방차, 소방관 등의 화재진압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이격된 안전한 장소 선정/활용

비상 시 대처방안

▶ 대피요령

- 침착하게 대처한다.
- 총지휘자에게 보고한다.
- 119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
- 교직원은 비상 시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한다.
- 원아를 신속하게 인솔해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 남은 원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영유아들을 안정시킨다.

▶ 교직원의 역할분담표



▶ 비상대피도(※ 어린이집의 건물 현황에 따라 대피도 작성하여 부착)

① 관계 기관

구분	기관명(상호)	전화번호	비고
관할 소방서	○○ 소방서		긴급전화 : 119
	○○ 119안전센터		
의 료 기 관	○○ 병원		
	○○ 보건소		
경 찰 서	○○ 경찰서		
상 급 기 관			
기 타			

② 자위소방대

구분	성명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기 관 장			대피유도반		
소방안전관리자					
지 휘 반			구조구급반		
소화/진압반			기 타		
소화/진압반					

어린이집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표(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 기준)

소방시설		
1	ABC급 소화기가 층별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구획된 실의 넓이가 33제곱미터(10평) 이상인 경우 추가로 설치하였다.	<input type="checkbox"/>
2	투척용소화기 보유시 세트 단위(4본 1세트 / A급)로 설치되어 있으며 변색, 누수 등의 외관상의 문제가 없다. ※ 투척용소화기의 사용연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변색, 누수 등 발생 시 폐기 후 ABC급 소화기로 교체 설치 권장	<input type="checkbox"/>
3	소화기는 쉽게 보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기 표시판이 같이 부착되어 있다. ※ 높이 1.5미터 이하 설치	<input type="checkbox"/>
4	주방 내 K급 소화기와 ABC급 소화기 병행 설치되어 있다. ※ 2017년 6월 이전 인가어린이집의 경우 법령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 K급 소화기 설치의무가 없으나, 안전예방을 위해 추가/병행 설치 권장	<input type="checkbox"/>
5	소화기기의 안전핀, 압력 게이지, 내용연수(10년), 외관상 문제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6	조리실,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 장소 상부에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용연수 및 압력게이지에 이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7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방, 화기취급장소 상단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전원연결상태 및 압력게이지가 정상이며, 가스탐지부, 가스차단부, 온도감지부, 소화액방출구, 수신부, 조작부 등 육안점검을 완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한다. - 밸브 압력계, 헤드 외형, 살수장애 여부 - 작동기능점검표	<input type="checkbox"/>
9	옥내소화전설비 관리 상태(외부·내부·기타)를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10	송수구 마개, 송수구 표지, 송수압력범위 표지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차 진입 및 호스연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11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등)는 모든 구획된 실 천장 중앙 및 계단 최상층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험버튼을 통해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2	비상경보설비의 수신기, 발신기, 표시등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발신기 누름스위치 작동에 장애물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13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작동중이며 전압정상, 축적설정(오작동방지)을 완료하였으며, 도통시험을 통해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4	비상구가 올바른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 1층 : 폭 0.75미터 이상, 높이 1.75미터 이상 / 2층 이상 : 폭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	<input type="checkbox"/>
15	외부침입 방지 및 영유아 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구 잠금장치는 안쪽에 있으며 성인에 의해서 쉽게 열 수 있다. ※ 열쇠 사용 금지(분실우려), 영유아 손 닿지 않는 높이에 걸고리 형식의 잠금장치 사용 권장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		
16	비상구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적재를 제거되어 있으며,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17	유도등은 전용배선을 통해서 설치되어 있으며 점검스위치를 활용 예비전원으로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18	비상구유도등은 주 출입구 및 비상구 상단에 설치되어 있다. ※ 덧문, 부속실 등 구획된 실을 통과하여 비상구가 있을 시 덧문, 부속실 등 입구 상단에 유도등 설치	<input type="checkbox"/>
19	창문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커튼, 블라인드, 바닥 카펫 등과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설치/부착하는 합판(목재), 종이류(2밀리터 이상), 칸막이, 흡음재는 방염제품으로 설치되어 있다. ※ 방염라벨(방염성능확인표시), 방염성능검사서 별도 관리	<input type="checkbox"/>
20	주방, 보일러실 등 가스사용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1	피난안내도는 각 층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으며 설치규격 준수 및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 설치규격 : B4 크기로 부착 단, 어린이집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A3 크기로 부착 ※ 소방시설물 위치(유도등, 소화기 등) 범례, 피난 방향, 비상상황 시 대처방안, 소화기 사용법 표시	<input type="checkbox"/>
22	비상시 양방향 대피, 유관기관 비상연락처 및 교직원(보호자) 비상연락망, 비상시 역할분담 등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안을 숙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3	방염대상물품(커튼, 블라인드, 벽면에 부착된 목재 등)은 방염제품으로 설치하였으며, 방염라벨 또는 방염성능확인표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24	매월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실제 외부로 대피) 이와 관련, 비상대응훈련 계획 및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5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 1회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6	옥내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였다. 위 소화설비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였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였다. ※ 단,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어린이집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27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시설장(원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 1회),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월 1회),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담당	<input type="checkbox"/>
28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선임자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건물 입구 외벽)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자가 점검표(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 기준)

통학차량		
1	<p>어린이보호표시가 기준에 부합되게 부착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재질을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로 탈부착 가능 - 차량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 -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보호표시 부착 	<input type="checkbox"/>
2	<p>정지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구가 열릴 때 :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짐 - 승강구가 닫힐 때 :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힘 	<input type="checkbox"/>
3	<p>표시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 또는 출발하려고 할 때 황색(호박색) 표시등 점멸 - 승강구 발판이 열릴 때 자동으로 황색(호박색)에서 적색 표시등으로 변경 점멸 - 승강구 발판이 닫혔을 때 자동으로 적색 표시등에서 황색(호박색) 표시등으로 변경 점멸 	<input type="checkbox"/>
4	<p>승강구 발판이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 발판 윗면 가로너비는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너비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단, 15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음) - 승하차 시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의 경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input type="checkbox"/>
5	<p>규정에 맞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차량 좌우측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곡률반경 200밀리미터 이상,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 	<input type="checkbox"/>
6	<p>규정에 맞는 틴팅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내부 확인이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앞면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 미만 	<input type="checkbox"/>
7	<p>영아의 체중범위에 맞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그룹(10kg 미만), 0+그룹(13kg 미만), 1 그룹(9~18kg) 	<input type="checkbox"/>
8	<p>차량용 구급함을 구비하고 있으며 구성품(외상처치용품, 상비약 등)이 유효기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p>	<input type="checkbox"/>
9	<p>차량에는 ABC급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분말소화기 사용연한(10년) 및 압력계이지가 정상범위(녹색)에 위치하여 있다.</p>	<input type="checkbox"/>
10	<p>어린이 하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 차실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한다.</p>	<input type="checkbox"/>
11	<p>통학차량 내에는 금연표시, 안전수칙, 차량신고필증, 안전교육확인증(비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필증 부착위치 : 차량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 보기 쉬운 곳 	<input type="checkbox"/>
12	<p>통학차량의 차령인 9년을 준수하고 있다.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차령이 연장되나, 차령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 차령 기산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차량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차량의 제작연도의 말일 	<input type="checkbox"/>
13	<p>운전자 운전경력조회(반기별), 건강검진(매년), 성범죄 경력조회(매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매년)를 실시(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운전자 및 동승보조자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후 확인증을 비치하였다.</p>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소방 및 통학차량 사례집

발행인	김영옥(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기획·편집	김기석(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김심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국장) 이미경(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팀장) 김광영(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주임)
감수	강수철(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장) 고광욱(소방기술사) 유정희(前 소방관, 서울북부교육청 안전지원단)
발행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